

특임교수규정

□ 제정 : 2020. 12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특임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 및 자격)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의하는 교육 및 연구,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임용절차) 특임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.

제4조(임용기간) 특임교수의 정년은 만70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구비서류)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
2. 학력 및 경력증명서
3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5조(의무) ① 특임교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특임교수는 본교에서 요청하는 특강, 초청세미나, 해당 직종의 역할과 부합하는 일 등에 응할 의무를 진다.

제6조(처우) ① 특임교수의 보수는 계약에 의해 임용된 경우 계약서에 의한다.

② 특임교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특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해임)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임용기간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, 정관 및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4-1-26 특임교수 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